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청원번호 : 79번
2. 청 원 자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17-13, 조형래 외 521명
3. 소개의원 : 강감창 의원(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
4. 접수일자 : 2017년 11월 17일
5.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3일

II. 청원요지

-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들의 수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었지만, 체계적인 수상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서울 동남권의 학생과 미취학 유아 및 성인들이 수상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상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청원함.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안전 체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초·중·고의 정규교과로 안전교육이 편성되고, 수상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수상 안전교육을 위한 전용 체험시설은 아직도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기존 수영교육의 형식적인 체험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함. 더욱이 서울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는 배명고등학교의 야구장 부지를 활용하면 별도의 부지 매입 예산의 투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동남권역에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이 가능한바, 서울 동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 뿐 만이 아닌 미취학 유아들과 성인들도 수상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을 건의함.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청원법(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2017년 11월 17일 강감창 의원의 소개로 조형래 외 521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79번으로 제출되어 2017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서울 동남권역에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상 사고에서의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상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을 실시하였고¹⁾, 「학교체육·예술교육 강화 지원계획」 및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도까지 초등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한 수영실기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국·공립과 사립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교육(4차시)을 포함해 총 6회 12차시 과정으로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처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1)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교육부, 2014.11.11

시내 학생들은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할 학교수영장 등의 시설여건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이나 사설수영장 등을 빌려 실기교육을 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체계적인 수영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1] 서울시내 학교수영장 건립현황

(기준 : 2017.2, 단위 : 개)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2013년	2014년 이후
학교수영장	58	3	-

○ 더욱이 현재 일반 수영장은 단순히 수영만을 위한 시설적 한계로 인해 실제 수상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대피 훈련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벌²⁾사용법 등의 체험 및 실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바,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은 학생들에게 실제 수상관련 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사고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고 예방 및 생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동남권의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의 수상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6월에 ‘수상안전체험 교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동남권 수상안전체험관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9월 4일 가천대학교에 ‘동남권역 수

2) 구명벌은 천막처럼 펴지는 둥근 형태의 구명보트를 이야기함.

상안전체험관건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구 용역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서는 수상안전 체험관의 건립이 학생안전체험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수상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표준 마련과 함께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다만,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비용이 약 8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는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추정한 건립 예산 38억 5천 8백만원 보다 약 46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등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분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남권역에 수상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있습니다(체육건강과-20283, 2017.11.30.).

이상으로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규칙 제30호, 2017.9.21.,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